

본 간행물에는 2020년 7월 6일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.

## NYC 영업 재개 3 단계: 근로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



실내 식사는 3 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주/시 당국은 실내식사를 해도 되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. 업데이트 및 정보는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 를 방문하십시오.

2020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3 단계의 일환으로 퍼스널 케어 사업장은 뉴욕시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 퍼스널 케어 사업장에 포함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미용
- 마사지 요법
- 네일 전문
- 스파
- 문신 및 피어싱 시설
- 자외선(UV) 및 비 UV 태닝
- 왁싱

해당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본 발행물을 읽고 일반 요건 및 산업별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 상세 지침은 [forward.ny.gov](http://forward.ny.gov) 에 나와 있습니다. 영업 재개,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지침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, 영업 재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를 신고하려면 **311**(근로자 보호 직통 전화) 또는 **1-212-436-0381** 로 전화하십시오.

### 영업 재개 시 모든 고용주가 따라야 할 일반 요건

<p><b>의사소통 및 선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무처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.</li> <li>• 귀하와 동료 모두 안전 및 위생 지침을 익혀야 합니다.</li> <li>• 매일 근로자 선별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.</li> </ul> <p>고용주는 아프거나 아프기 시작하는 직원을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원과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지침에 대한 정보가 적힌 간판을 게시해야 합니다.</li> </ul>
<p><b>보호 장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귀하와 동료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체품을 제공해야 합니다.</li> </ul> <p>고용주는 귀하와 동료들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, 세척 및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.</p> <p>고용주는 직원이 고객을 응대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6 피트 간격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경우 직원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.</p>
<p><b>위생, 청소 및 소독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원을 위한 손 위생 장소를 마련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비누, 물, 페이퍼 타올을 비롯해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% 이상인 손 소독제를 갖춘 구역이 포함됩니다.</li> <li>• 공용 공간 및 접촉이 빈번한 표면과 물건은 정기적으로 자주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.</li> </ul> <p>그러한 예로는 캐비닛 손잡이, 의자 팔걸이, 도어 핸들, 엘리베이터, 난간, 전등 스위치, 로비, 냉장고 문 손잡이, 화장실이 있습니다.</p> <p>고용주는 고객이 사용하는 공간과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. 그러한 예로는 사용이 끝난 의자, 선텐 부스 등이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비와 도구는 되도록 공유하지 말고, 작업대, 장비 및 도구는 사용한 후에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십시오.</li> </ul> <p>그러한 예로는 컴퓨터, 전화기, 금전 등록기, 정리 도구가 있습니다.</p> <p>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어렵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어 청소할 수 없는 경우,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장갑을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.</p>

<p><b>물리적 거리 두기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고객 좌석 구역을 포함하여 개인 간 <b>6피트거리가 확보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고 테이프 또는 기타 마커를 부착하십시오.</b></li> <li>● 고객과 방문객이 <b>2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견딜 수 있는 연령이면, 얼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.</b></li> <li>● 실내 한 구역의 최대 면적 중 <b>50%까지만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</b> <i>퍼스널 케어의 경우 최대 인원에는 근로자, 고객, 방문자가 포함됩니다.</i> 화장실이나 휴게실처럼 작은 공간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간판을 걸어야 합니다.</li> <li>● 사람 간 대면 모임은 최대한 제한하십시오.</li> <li>● 배달 및 픽업 전용 공간을 지정하여 사람 간 대면을 최대한 제한하십시오.</li> <li>● 대기실 등 필수가 아닌 공용 구역을 모두 폐쇄하십시오.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# 퍼스널 케어요구 사항

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:

- 뉴욕 주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, DOH), 산업 안전 보건국(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, OSHA)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CDC)의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.
- 모든 식사 또는 베버리지 구역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따르십시오.
- 청소 및 소독 시 COVID-19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미국 환경 보호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에서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.
-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우나, 한증막 및 기타 서비스 사업장은 폐쇄하십시오.
-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, 고객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얼굴 등의 서비스는 금지합니다.
-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얼굴 가리개 외에 마스크 또는 안전 고글을 제공합니다.
- 매 고객 서비스가 끝날 때마다 공유 공간, 도구 및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. 여기에는 의자, 마사지 테이블, 머리 받침, 선택 부스 및 재사용 및 비일회용 도구가 포함됩니다. 청소와 소독을 위해 예약 간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.
- 플렉시 유리나 같은 물리적 장벽이 없다면, 안내 및 캐시어 직원은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 직원은 장벽이 있든 없든, **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.**

마사지 요법 및 스파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:

- 직원이 마사지 테이블의 엷드린 자세를 취한 고객에게 마사지를 시술할 때에는 **얼굴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 또는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하십시오.**
- 고객의 얼굴이 아래를 향하고 있거나 이 위치를 피할 경우 마사지 테이블에 깨끗하고 소독된 얼굴 가리개(예: 페이스 크래들에 있는 면 베갯잇)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
- 마사지 도중 엷드린 자세에서 등이나 옆으로 눕힐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십시오.
- 고객마다 린넨을 새 것으로 교환 및 세탁하고, 사용 후에는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.

네일 및 왁싱 살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:

- 고객마다 품목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. 여기에는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욕조 및 그릇, 손 및 발 건조대, 왁스 용기, 타월, 핑거볼, 주걱이 포함됩니다. **딥 애플리케이션을 두 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**

문신 및 피어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:

- 모든 고객 시술이 시작되기 전 직원이 밀봉된 포장에서 새 바늘을 꺼내서 사용하게 하십시오.
- 깨끗하고 사용하지 않은 스텐실 또는 면도기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폐기하십시오.
- 고객 시술 시 직원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게 하십시오.